

#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「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 가산료」 관련 수가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

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'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' 수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## 1. 요양급여 대상

- (적용대상) 요양병원\*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\*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(단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)

## 2. 적용수가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 (금액)
요양병원 코로나19	AH033	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 가산료	20.63점 (1,620원)

## 3. 산정기준

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·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

- 아 래 -

- 가.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\*하며, 감염예방·관리 정책 가산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·관리 활동을 함

\*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

- 1)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
  - (가)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, 감염병환자등의 처리
  - (나) 병원감염 발생 감시,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,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
  - (다)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
  - (라)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
  - (마)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
- 2) 부서별 감염관리, 환경관리, 의료기구 세척·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
- 3) 종사자(간병인 등)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

#### 4.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

가. 입원환자 1일당\* 1회 산정 (낮병동 제외)

\*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

나.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,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업무」에 따라 국가·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 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

※ 질의응답 4번 참고

다. 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’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

\* 기존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인력 기 신고 기관 → 재신고 불필요

5. 적용기간: **코로나19 재유행 기간 고려 2022.8.1.부터 2022.9.30.(10.1. 0시 종료)까지 한시적 적용**

#### 6. 청구방법

가. 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’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제3편 제3부를 따르며,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

나. 명세서 진료내역의 “01항”(진찰료) “03목”(응급 및 회송료 등)에 기재

1)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

2)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년 8월 16일부터 가능

\*\*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,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을 명세서 진료내역의 ‘변경일’란에 “CCYYMMDD” 형식(8자리)으로 기재함

연번	질 의	답 변
1	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정책가산료’ 산정 방법은?	○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산정 가능함
2	입원 1일당 1회 산정의 의미는?	○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이며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, -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%를 별도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
3	‘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’(수가코드 AH034, AH038)와 중복산정 가능한지?	○ 동일한 기간에 동시 산정할 수 없음
4	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정책가산료’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?	○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[별표2]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[별표1]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** 단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- 다만,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」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
5	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정책가산’ 관련하여 인력신고 필요한지?	○ 기존 ‘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’(수가코드 AH034)의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는 추가 신고 불필요 * 단,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
6	의료기관인증 평가결과 ‘인증’ 또는 ‘조건부인증’ 기관만 산정가능한지?	○ 정책 가산수가로 인증여부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
7	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정책가산료’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?	○ ‘요양병원 감염예방·정책가산료’와 입원료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며 ○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‘변경일’란에 “CCYYMMDD” 형식(8자리)으로 기재함